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2조제1항 중 “15일이내”를 “30일이내”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5분”을 “2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적발된 날(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품질검사 결과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광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탄광업, 석탄가공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석탄광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 반 사 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 및 제1항제3호	경 고	광업정지 10일	광업정지 1개월	광업정지 3개월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의무에 위반한	법 제21조제3항 및 제1항제4호				

경우 가. 표시 평균열량 하 한치에 미달되는 경우 나. 로트별 검사열량이 3,000kcal/kg에 미달 되는 경우 다. 로트별 휘발분이 11% 이상일 경우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에 너관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경 고	경 고	광업정지 10일	광업정지 1개월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 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 및 제1항제4호	경 고	경 고	광업정지 10일	광업정지 1개월
비고: 1. 제2호가목에서 “표시 평균열량 하한치”란 해당 월 실시된 1회 이상의 품질검사 시 표시된 발열량 가중평균 값의 하한치를 말한다. 2. 제2호다목에서 “로트”란 평균 품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기관에서 정한 일정량의 석탄을 말한다.		경 고	경 고	광업정지 10일	광업정지 1개월

나.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 반 사 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1. 법 제17조제3항에 따 른 등록기준에 미달 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등록취소	-
2.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결격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시)	-
3. 법 제24조제1항에 따 른 조치에 응하지 아 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경 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0일	등록취소
4. 법 제25조제1항에 따 른 품질유지의무에 위	법 제21조 제1항제4호				

만한 경우 가. 누계별점 21점 이 상 50점 이하 또는 발열량 위반횟수 3 회 초과 후 다시 벌 점부과대상에 해당 한 경우 나. 누계별점 50점 초 과 또는 발열량 위 반횟수 5회 초과후 다시 벌점부과대 상에 해당한 경우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가공제품 에 너관 등 폭발 우 려가 있는 이물질 이 포함된 경우		경 고	-	-	-
라.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이 품질기준 에 미달하는 경우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1) 표시 평균열량 하 한치에 미달되는 경우 2) 로트별 검사열량 이 3,000kcal/kg에 미 달되는 경우 3) 로트별 휘발분이 1 1% 이상일 경우 4)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에 너관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등록취소
비고: 1. 누계벌점의 계산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누계벌점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벌점을 합산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받은 날과 그 벌점을 받은 후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벌점은 제4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누계벌점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탄품질유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점은 높이 또는 지름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각 1점, 무게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매 10g 미만 1점, 발열량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매 10kcal/kg당 1점, 전락강도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2점, 휘발분기준의 경우에는 매 1% 초과시 5점을 각각 부과한다. 3. 기타 가공탄 품질유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점은 분탄함유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5점, 매 1% 초과시 5점, 유황분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5점, 매 0.1% 초과시 1점, 발열량기준 미달의 경우 매 10kcal/kg당 1점을 각각 부과한다.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석탄의 품질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

가. 발열량 위반

(단위: 만원)

표시평균발열량 하한치에 대한 미달 정도(kcal/kg)	100 이하	101 이상 200 이하	201 이상
전년도 생산량			
15만톤 이상	200	300	500
15만톤 미만	100	200	300
비고: 1. 전년도 생산량은 석탄광업자에 대한 기준으로 「광업법」 제83조에 따른 광산별 광물생산 보고서 상의 정광생산량에 따른다.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품질기준 위반에 대하여 연탄제조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생산량 15만톤”은 “전년도 같은 달 연탄생산량 70만개”로 본다. 2. 전년도 생산량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량이 확정된 달까지의 생산량을 생산월수로 나눈 수량에 12를 곱하여 환산한다. 3. 석탄광업자의 전년도 생산량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6개월 이내의 생산이 있는 달의 생산량을 생산월수로 나눈 수량에 12를 곱하여 환산한다. 연탄제조업자의 전년도 같은 달의 연탄생산량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실시 당월의 연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로트별 검사발열량이 3,000kcal/kg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가목의 과징금 부과 기준 중 201kcal/kg 이상란의 해당 금액을 부과한다.

다. 휘발분함유량(무수기준으로 측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목의 과징금 부과기준 중 201kcal/kg 이상란의 해당 금액을 부과한다.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에 뇌관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병과한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별표 1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중된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에 2차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과징금 금액	$\times \frac{2\text{차 이상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1\text{차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비교: 1. 위 계산식을 적용할 때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위 계산식을 적용할 때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2차 위반을 1차 위반으로, 1·2차 위반이 경고인 경우에는 3차 위반을 1차 위반으로 본다. 3. 가목부터 다목까지 관련하여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 1차 위반과 표시평균열량 하한치에 대한 미달정도 또는 전년도 생산량 구간을 달리 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위 계산식을 적용할 때 2차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구간의 과징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차 위반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연탄의 품질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

가. 연탄의 품질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별표 1 제2항 나목 규정에 의한 누계벌점이 50점을 초과하거나 발열량 위반횟수 5회를 초과한 후 다시 벌점 부과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다음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나. 발열량의 위반

(단위: 만원)			
별표 3의 연탄발열량 기준에 대한 미달정도(단위: kcal/kg)	100 이하	101 이상 200 이하	201 이상
전년도 같은 달의 연탄생산량(단위: 만개)			
300 이상	200	250	300
150 이상 300 미만	120	150	180
70 이상 150 미만	70	90	110

35 이상 70 미만	45	60	75
15 이상 35 미만	30	40	50
15 미만	20	25	30
비교: 1. 전년도 같은 달의 연탄생산량은 별표 3에 따른 1호탄을 기준으로 하여 월간 석탄사용 톤수에 톤당 10,000/36을 곱하여 환산한다. 2. 전년도 같은 달의 연탄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실시 당월의 연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 별표 3에 따른 연탄의 치수 또는 전락강도에 위반한 경우에는 나목의 과징금 부과기준 중 100kcal/kg 이하란의 해당금액의 5분의 1을 부과한다. 다만, 연탄의 치수 중 무게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된 무게(g)를 미달된 발열량(kcal/kg)으로 보아 가목의 과징금 부과기준의 해당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라. 휘발분함유량을 위반한 경우에는 나목의 과징금 부과기준 중 201kcal/kg 이상란의 해당금액을 부과한다.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연탄에 뇌관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한다.

바.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병과한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별표 1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중된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에 2차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과징금 금액	$\times \frac{2\text{차 이상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1\text{차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비교: 1. 위 계산식을 적용할 때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위 계산식을 적용할 때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2차 위반을 1차 위반으로, 1·2차 위반이 경고인 경우에는 3차 위반을 1차 위반으로 본다.	

3. 나목부터 마목까지 관련하여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 1차 위반과 연탄발열량 기준에 대한 미달정도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의 연탄생산량 구간을 달리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위 계산식을 적용할 때 2차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구간의 과징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차 위반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기타 가공탄의 품질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

가. 기타 가공탄의 품질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별표 1 제2항 나목 규정에 의한 누계벌점이 50점을 초과하거나 발열량 위반횟수 5회를 초과한 후 다시 벌점부과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다음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나. 발열량의 위반

(단위: 만원)

기타 가공탄 발열량 기준에 대한 미달정도(단위: kcal/kg)	100 이하	101 이상 200 이하	201 이상
전년도 기타 가공탄 생산량(단위: 천톤)			
50 이상	250	350	500
30 이상 ~ 50 미만	120	180	250
10 이상 ~ 30 미만	60	90	150
10 미만	30	45	70
비고: 전년도 기타 가공탄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실시년도 당월까지의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분탄함유 허용치 위반

발열량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중 100kcal/kg 이하 란의 해당금액을 부과한다.

라. 유황분 허용치 위반

발열량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중 100kcal/kg 이하 란의 해당금액을 부과한다.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타 가공탄에 뇌관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

함된 경우에는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한다.

바.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병과한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별표 1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중된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에 2차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text{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과징금 금액} \times \frac{\text{2차 이상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text{1차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비고: 1. 위 계산식을 적용할 때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위 계산식을 적용할 때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2차 위반을 1차 위반으로, 1·2차 위반이 경고인 경우에는 3차 위반을 1차 위반으로 본다. 3. 나목과 관련하여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 1차 위반과 기타 가공탄 발열량 기준에 대한 미달정도 또는 전년도 기타 가공탄 생산량 구간을 달리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위 계산식을 적용할 때 2차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구간의 과징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차 위반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기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해 당 조 항	과 징 금 금 액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호	1,000
2.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1,000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500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500
---	-----------------------	-----

비고 : 1) 별표 1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중된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에 2차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text{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과징금 금액} \times \frac{\text{2차 이상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text{1차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 2) 위 계산식을 적용할 때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3) 위 계산식을 적용할 때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이 경고 또는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2차 위반을 1차 위반으로 본다.

별표 2 제1호 가목 중 “7퍼센트 미만이어야”를 “11퍼센트 미만, 발열량이 3,000kcal/kg”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연탄제조업자가 연탄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광업자 외의자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의 품질기준을 준용한다.

제2호나목 중 “사업화탄소비중액(비중 1.595)을 사용하여 부유된 시료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을 “영 제45조제2항제4호”로, 같은 목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른”을 “영 제45조제2항제4호에 따라”로, 같은 목 및 같은 호 사목1)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 비고 제2호 본문 중 중 “각 호”를 “검사장소가 연탄제조업자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각 호”로 하고, 같은 목 3) 중 “휘발분함유량이 7퍼센트 미만이어야 하며, 수입무연탄을 혼합하여 제조한 석탄가공제품의 경우에는 휘발분함유량이”를 “휘발분함유량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3) 중 “사업화탄소비중액(비중 1.595)을 사용하여 부유된 시료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1)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을 “영 제45조제2항제4호”로, “한국광해관리공단 또는 연료공업협동조합”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1) 본문 중 “한국광해관리공단 또는 연료공업협동조합에게”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종류	입상 및 괴탄제품	마세크탄 제 품	무연코크스 제 품	특수탄 제 품
o 발열량(Kcal/Kg)	6,500 이상	5,000 이상	7,000 이상	5,000 이상
o 유 황 분	1.0% 이하	좌동	좌동	좌동
o 분탄함유 허용치	5.0% 이하	-	-	-

별표 3 제2호나목1) 중 “석탄류”를 “석탄류 및 코크스류”로 하고, 같은 호 라 목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을 “영 제45 조제2항제4호”로, 같은 목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1항”을 “영 제45조제2항제4호”로, 같은 1) 및 같은 호 사목1) 중 “한국광해 관리공단”을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별표 4의 연탄제조업의 시설기준란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4 비고 중 “:”를 “: 1.”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아 연탄의 원료로 사용하는 연탄제조업자는 석탄가공업 품질분석시험시설 외에 석탄광업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석탄가공업 품질분석시험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것에 한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하는 석탄에 대한 품질검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6 제5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로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라 받은 처분은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있어서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 처분으로 본다.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의 광업권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업지적 지적 제 호
	광종명:	면적 헥타	
인접광구의 광업권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광업지적 지적 제 호	
	광종명:	면적 헥타	
인접광구의 사용계획	사용목적:	사용할 인접 광구의 위치:	
	사용면적:	사용조건:	
	사용기간:	사용료:	

「석탄산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접광구의 사용결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인접광구사용에 관한 협의내용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및 검토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조사보고서검 토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기간결재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결과통보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석탄가공업 [] 연탄제조업 [] 폐업
[] 기타 가공탄제조업 [] 휴업 신고서
[] 재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등 록 번 호	제 호	등록 연월일:	
신 고 인	상 호 또 는 명 칭 :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폐업 (재개) 예정 연월일 :			
휴업 예정 기간 :			
폐업·휴업 또는 재개의사유 :			

「석탄산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 폐업 [] 휴업 [] 재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 법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 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 한다. 다만, 「대한석탄공사 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가 소유 하는 광구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한석탄공사를 제외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2. 3. (생략)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 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 른 한국광해관리공단	제4조(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 ----- ----- ----- ----- ----. ----- ----- ----- ----- ----- ----- ----.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 3. (현행과 같음) <삭제>
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①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날부 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①----- ----- ----- ----- -- 30일이내-----

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생략)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석탄 및 석 탄가공업제품의 지역별 수급사정,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생산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 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2분----- ----- ----- ----- ----- ----- 3천만원 -----.
제16조(석탄가공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① (생략) <신설>	제16조(석탄가공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 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 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 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

<신 설>	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	---

현행	개정안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3조 관련) <신설>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적발된 날(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품질검사 결과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광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 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탄광업, 석탄가공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1. 석탄광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 반 사 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경 고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10일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가. 원별 검사평균열량 하한치에 미달되는 경우		경 고	경 고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10일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1개월
나. 로트별 검사열량이 3,000kcal/kg에 미달 되는 경우		경 고	경 고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10일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1개월
다. 로트별 휘발분이 7% 이상일 경우(국내에 서 생산된 석탄의 경우는 제외한다)		경 고	경 고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10일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1개월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에 뇌관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 물질이 포함된 경우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5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1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1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1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경 고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10일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1	영업정지 3개월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적발된 날(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검사 결과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비교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2) 1)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1]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가. -----

위 반 사 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1. -----	법 제21조 제3항 및 제1항제3호	----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
2. -----	법 제21조 제3항 및 제1항제4호	----	----	----	----
가. 표시 평균열량 -----		----	----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		----	----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다. ----- 11%		----	----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	법 제21조 제3항 및 제1항제4호	----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
비고: 1) ~ 2) <삭제>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 반 사 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과 또는 영업정지 15일	등록취소	-
2.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시정명령 (6개월 이내)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결격사유 발생일로 부터 1년 경과시)	-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경 고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또는 7일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10일	등록취소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가. 누계별점 21점 이상 50점 이하 또는 발열량 위반횟수 3회 초과 후 다시 별점 부과대상에 해당한 경우 나. 누계별점 50점 초과 또는 발열량 위반 횟수 5회 초과후 다시 별점 부과대상에 해당한 경우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가공제품에 뇌관	법 제21조 제1항제4호	경 고	-	-	-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5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7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1	영업정지 1개월
		일	일	0일	
		과징금부과 또는	과징금부과 또는	과징금부과 또는	과징금부과 또는

나. -----

위 반 사 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1. -----		----	영업정지 15일	----	-
2. -----		----	영업정지 1개월	----	-
3. -----		----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0일	----
4. -----		----	----	----	----
가. -----		----	-	-	-
나. -----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0일	----
다. -----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신설>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경 고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등록취소
비고: 1.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적발된 날(제4호가목과 나목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검사 결과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누계벌점의 계산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누계벌점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벌점을 합산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받은 날과 그 벌점을 받은 후 적발된 날(공단에서 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벌점 부과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달의 말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 -----					
라. 석탄가공제품의 원료 로 사용되는 석탄이 품질기준에 미달하 는 경우 (석탄광업자 외의 자 로부터 석탄을 공급 받는 경우에 한한다)					
1) 표시 평균열량 하한치	경 고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에 미달되는 경우			10일	1개월	
2) 로트별 검사열량이	경 고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3,000kcal/kg에 미달			10일	1개월	
되는 경우					
3) 로트별 휘발분이 1	경 고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1% 이상일 경우			10일	1개월	
4)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석탄에 뇌관 등 폭발	5일	10일	15일	1개월	
우려가 있는 이물질					
이 포함된 경우					
5. ----- ----- -----	-----	-----	영업정지 10일	-----	-----
비고: 1.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1. -----. 가. ----- ----- 적발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다.
나.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벌점은 제4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누계벌점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연탄품질유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점은 높이 또는 지름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각 1점, 무게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매 10g 미만 1점, 발열량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매 10kcal/kg당 1점, 전락강도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2점, 수입탄 부당혼합의 경우에는 혼합비율 1%당 5점을 각각 부과한다.
4. 기타 가공탄 품질유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점은 분탄함유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5점, 매 1% 초과시 5점, 발열량기준 미달의 경우 매 10kcal/kg당 1점을 각각 부과한다.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금액(제14조제1항 관련) 1. 석탄의 품질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 가. 발열량 위반 (단위: 만원) <table> <tr> <th>표시평균열량 하한치에 대한 미달 정도(kcal/kg)</th><th>100 이하</th><th>101 이상 200 이하</th><th>201 이상</th></tr> <tr> <td>전년도 생산량</td><td></td><td></td><td></td></tr> <tr> <td>30만톤 이상</td><td>100</td><td>200</td><td>300</td></tr> <tr> <td>30만톤 미만</td><td>50</td><td>100</td><td>200</td></tr> </table> 비고: 1. 전년도 생산량은 「광업법」 제83조에 따른 광산별 광물생산 보고서 상의 정광생산량에 따른다. <신설> 2. 전년도 생산량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량이 확정된 달까지의 생산량을 생산월수로 나눈 수량에 12를 곱하여 환산한다. 3. 전년도 생산량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6개월 이내의 생산이 있는 달의 생산량을 생산월수로 나눈 수량에 12를 곱하여 환산한다. <신설>				표시평균열량 하한치에 대한 미달 정도(kcal/kg)	100 이하	101 이상 200 이하	201 이상	전년도 생산량				30만톤 이상	100	200	300	30만톤 미만	50	100	200
표시평균열량 하한치에 대한 미달 정도(kcal/kg)	100 이하	101 이상 200 이하	201 이상																
전년도 생산량																			
30만톤 이상	100	200	300																
30만톤 미만	50	100	200																
나. (생략) 다. 휘발분함유량(무수기준으로 측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가목의 과징금 부과기준 중 201kcal/kg 이상란의 해당금액을 부과한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된 석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에 뇌관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나. (현행과 같음)
2. ----- ----- ----- ----- ----- -----, 유효분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5점, 매 0.1% 초과시 1점, 발열량기준 미달의 경우 매 10kcal/kg당 1점을 각각 부과한다.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금액(제14조제1항 관련) 1. ----- 가. ----- (----: ----) <table> <tr> <th>표시평균열량 하한치에 대한 미달 정도(kcal/kg)</th><th>100 이하</th><th>101 이상 200 이하</th><th>201 이상</th></tr> <tr> <td>전년도 생산량</td><td></td><td></td><td></td></tr> <tr> <td>15만톤 이상</td><td>200</td><td>300</td><td>500</td></tr> <tr> <td>15만톤 미만</td><td>100</td><td>200</td><td>300</td></tr> </table> 비고: 1. ----- 석탄광업자에 대한 기준으로 「광업법」----- -----, 석탄 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품질기준 위반에 대하여 연탄제조 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생산량 15만톤”은 “전년도 같은 달 연탄생산량 70만개”로 본다. 2. -----. 3. 석탄광업자의 전년도 생산량이 -----, 연 탄제조업자의 전년도 같은 달의 연탄생산량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실 시 당월의 연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평균열량 하한치에 대한 미달 정도(kcal/kg)	100 이하	101 이상 200 이하	201 이상	전년도 생산량				15만톤 이상	200	300	500	15만톤 미만	100	200	300
표시평균열량 하한치에 대한 미달 정도(kcal/kg)	100 이하	101 이상 200 이하	201 이상																
전년도 생산량																			
15만톤 이상	200	300	500																
15만톤 미만	100	200	300																
나. (현행과 같음) 다. -----을 위반한 경우에는----- - -----, <삭제>																			
라. ----- -----경우에는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한다.																			

(단위: 만원)				
구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과징금	70	150	300	500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정된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예)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자수는 그 위반행위의 첫 부과처분 자수[1]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병과한다.

<신설>

2. 연탄의 품질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

<신설>

가. 발열량의 위반

(단위: 만원)			
별표 3의 연탄발열량 기준에 대한 미달정도(단위: kcal/kg)	100 이하	101 이상 200 이하	201 이상
천년도 같은 달의 연탄생산량(단위: 만개)			
<신설>			
<u>300 이상</u>	<u>60</u>	<u>90</u>	<u>150</u>
150 이상 300 미만	<u>30</u>	<u>45</u>	<u>70</u>
70 이상 150 미만	<u>15</u>	<u>25</u>	<u>40</u>
35 이상 70 미만	<u>10</u>	<u>15</u>	<u>20</u>
35 미만	<u>5</u>	<u>10</u>	<u>15</u>
비고: 1. ~2. (생략)			

나. 별표 3에 따른 연탄의 치수 또는 전락강도에 위반한 경우에

<삭제>

다. ----- .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별표 1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중된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에 2차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u>가목부터 라목까지의</u> <u>과정금 금액</u>	<u>2차 이상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u>
	<u>1차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u>

비고: 1. 위 개선식을 적용할 때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위 개선식을 적용할 때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2차 위반을 1차 위반으로, 1·2차 위반이 경고인 경우에는 3차 위반을 1차 위반으로 본다.

3. 가목부터 다목까지 관련하여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 1차 위반과 표의평결할 하한치에 대한 미달정도 또는 전년도 생산량 구간을 달리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위 개선식을 적용할 때 2차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구간의 과징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

가. 연탄의 품질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별표 1 제2항 나목 규정에 의한 누계별점이 50점을 초과하거나 발열량 위반횟수 5회를 초과한 후 다시 벌점부과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다음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4. _____

별표 3의 연탄발열량 기준에 대한 미달정도(단위: kcal/kg)		(----: ----)	
천년도 같은 달의 연탄생산량(단위: 만개)	100 이하	101 이상	201 이상
		200 이하	201 이하
300 이상	200	250	300
150 이상 300 미만	120	150	180
70 이상 150 미만	70	90	110
35 이상 70 미만	45	60	75
15 이상 35 미만	30	40	50
15 미만	20	25	30
비고: 1. ~ 2. (현행과 같음)			

Cl. -----

는 **가목**의 과징금 부과기준 중 100kg/kg 이하란의 해당금액의 5분의 1을 부과한다. 다만, 연탄의 치수 중 무게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된 무게(g)를 미달된 발열량(kcal/kg)으로 보아 **가목**의 과징금 부과기준의 해당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다. 휘발분함유량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목**의 과징금 부과기준 중 201kcal/kg 이상란의 해당금액을 부과한다.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연탄에 뇌관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단위: 만원)				
구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과징금	50	100	150	200

비고: 1)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1)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1]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들어 상 있었된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병과한다. <신설>

<신설>

3. 기타 가공탄의 품질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

<신설>

가. (생략)

나목

라. _____ 나
 목 _____

다. -----
- 경우에는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한다.

<삭제>

바.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
-----,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
과할 수 없다.

사. 별표 1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중된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에 2차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u>나로부터 마음까지의</u> <u>과정금 금액</u> ×	<u>2차 이상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u> <u>1차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u>
비고: 1. 위 계산식을 적용할 때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위 계산식을 적용할 때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2차 위반을 1차 위반으로, 1·2차 위반이 경고인 경우에는 3차 위반을 1차 위반으로 본다. 3. 나로부터 마음까지 관련하여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 1차 위반과 연달발생할 기준에 대한 미달정도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의 연달생산한 구간을 달성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위 계산식을 적용할 때 2차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구간의 과정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차 위반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정금을 부과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

가. 기타 가공탄의 품질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별표 1 제 2항 나목 규정에 의한 누계벌점이 50점을 초과하거나 벌점량 위반횟수 5회를 초과한 후 다시 벌점부과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다음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나. (현행과 같음)

터 60일간 보관한다.
마. 품질검사 실시
1) 실시기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한다.
2) (생략)
바. (생략)
사. 재검사
1) 발열량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험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수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 재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 3) (생략)
아. (생략)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품질분석시험시설의 설치기준
(제18조 관련)

구 분	시 설 기 준
석탄광업	1. ~ 3. (생략)
연탄제조업	1. (생략) 2. 강도검사시설 가. 압축강도시험기 나. 전락강도시험기 3. (생략)
기타 가공탄 제조업	1. ~ 2. (생략)
비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석탄가공업자들로 구성된 조합은 석탄가공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원의 개별품질분석 시험시설의 설치에 갈음하여 품질분석시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등에 대한 수수료(제26조관련)	
(단위 : 원)	
항 목	수 수 료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20,000
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의 등록사항 및 변경신고	2,000
3. <삭제>	
4.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의 지위승계신고	1,000
5. 법 제22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의 휴업·폐업신고	1,000
6. 법 제2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휴업한 석탄가공업의 재개신고	1,000

-----.
마. -----
1) -----
영 제4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
2)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
1) -----한
국광해광업공단 -----.
2) ~ 3)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품질분석시험시설의 설치기준
(제18조 관련)

구 분	시 설 기 준
석탄광업	1. ~ 3. (현행과 같음)
연탄제조업	1. (현행과 같음) 2. ----- 가. <삭제>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기타 가공탄 제조업	1. ~ 2. (현행과 같음)
비고: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석탄가공업자들로 구성된 조합은 석탄가공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원의 개별 품질분석시험시설의 설치에 갈음하여 품질분석시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아 연탄의 원료로 사용하는 연탄제조업자는 석탄가공업 품질분석시험시설 외에 석탄광업 품질분석 시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석탄가공업 품질분석시험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것에 한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하는 석탄에 대한 품질검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등에 대한 수수료(제26조관련)	
(단위 : 원)	
항 목	수 수 료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20,000
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의 등록사항 및 변경신고	2,000
3. <삭제>	
4.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의 지위승계신고	1,000
5. <삭제>	
6. 법 제2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휴업한 석탄가공업의 재개신고	1,000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

(앞 쪽)

접수 연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설립연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 의 광업권 표시	광주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광업지적 지적 제 호 면적 헥타	
인접광 구의 광업권 표시	광주소재지: 등록번호: 광종명:	광업지적 지적 제 호 면적 헥타	
인접광 구의 사용 계획	사용목적: 사용면적: 사용기간:	사용할 인접 광구의 위치: 사용조건: 용료:	

「석탄산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접광구의 사용결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제출 서류	인접광구사용에 관한 협의내용 1부.	수수료	없음
----------	---------------------	-----	----

처 리 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및 검토
처리기관
산업통상자
원부

→ 현물기관에
조사요청
처리기관
산업통상자
원부

→ 조사보고서
검토
처리기관
산업통상자
원부

→ 기안결재
처리기관
산업통상자
원

→ 결과통보
처리기관
산업통상자
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

(앞 쪽)

접수 연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설립연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 의 광업권 표시	광주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광업지적 지적 제 호 면적 헥타	
인접광 구의 광업권 표시	광주소재지: 등록번호: 광종명:	광업지적 지적 제 호 면적 헥타	
인접광 구의 사용 계획	사용목적: 사용면적: 사용기간:	사용할 인접 광구의 위치: 사용조건: 사용료:	

「석탄산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접광구의 사용결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제출 서류	인접광구사용에 관한 협의내용 1부.	수수료	없음
----------	---------------------	-----	----

처 리 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및 검토
처리기관
산업통상자
원부

→ 현물기관에
조사요청
처리기관
산업통상자
원부

→ 검토
검토
처리기관
산업통상자
원부

→ 기안결재
처리기관
산업통상자
원

→ 결과통보
처리기관
산업통상자
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석탄가공업

☐ 연탄제조업

☐ 기타 가공탄제조업

☐ 폐업

☐ 휴업

☐ 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등록번호	제	호	등록 연월일:

신고인

상 호 또는 명 칭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전화번호:

폐업(재개) 예정 연월일 :

휴업 예정 기간 :

폐업·휴업 또는 재개의 사유 :

「석탄산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 폐업 ☐ 휴업 ☐ 재개)를 위하여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년 월 일(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1,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석탄가공업

☐ 연탄제조업

☐ 기타 가공탄제조업

☐ 폐업

☐ 휴업

☐ 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등록번호	제	호	등록 연월일:

신고인

상 호 또는 명 칭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전화번호:

폐업(재개) 예정 연월일 :

휴업 예정 기간 :

폐업·휴업 또는 재개의 사유 :

「석탄산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 폐업 ☐ 휴업 ☐ 재개)를 위하여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년 월 일(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5261

- 33 -